[일련번호: 1]

강 원 도

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단(前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급량비 등의 지급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 구조구급활동비)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1)]" 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5”,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5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과 같이 휴직, 장기교육 입교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 7명 1,260,100원 및 구조구급활동비 1명 103,23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7명, 1,260,100원), 구조구급활동비 반납(1명, 103,230원)								
1	소방○○○○	장기교육(인명구조사 2급)	19. 6. 3.~19. 7. 5.	2019	6	170,000	11,330		
					7	11,330	148,060		
					8	170,000	170,000		
				소계		351,330	329,390		
				구분		반납	21,940		
2	소방○○○○	장기교육(인명구조사 2급)	19. 6. 3.~19. 7. 5.	2019	6	170,000	11,330		
					7	11,330	148,060		
					8	170,000	170,000		
				소계		351,330	329,390		
				구분		반납	21,940		
3	소방○○○○	병가, 질병휴직(무릎수술)	19. 7.15.~19.10.16.	2019	7	170,000	76,770		
					8	170,000	0		
					9	0	0		

					10	0	82,250		
					11	252,250	170,000		
				소계		592,250	329,020		
				구분		반납	263,230		
4	소방○○○○	육아휴직	19.10.25.~20.10.24.	2019	10	170,000	131,610		
					11	170,000	0		
				2020	10	0	38,380		
					11	208,380	170,000		
				소계		548,380	339,990		
				구분		반납	208,390		
5	소방○○○○	질병휴직	20. 6.21.~21. 6.20.	2020	6	170,000	109,670		
					7	0	-		
				2021	6	56,660	56,660		
				소계		226,660	166,330		
				구분		반납	60,330		
6	소방○○○○	장기교육(인명구조사 2급)	20. 7.27.~20. 8.28.	2020	8			96,770	83,870
					9			100,000	9,670
					10			100,000	100,000
				소계				296,770	193,540
				구분				반납	103,230
7	소방○○○○	병가, 휴직(팔골절)	20.11.13.~21. 5.24.	2020	11	170,000	68,000		
					12	170,000	0		
				2021	1	170,000	0		
					2	170,000	0		
					3	5,480	0		
				소계		685,480	68,000		
				구분		반납	617,480		
8	소방○○○○	육아휴직	21. 2.18.~21. 8.17.	2021	2	170,000	103,210		
					8	76,770	76,770		
				소계		246,770	179,980		
				구분		반납	66,79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5.~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가 없음에도 아래 [표2] “급량비 초과지출 내역”과 같이 총 24명에게 급량비를 지출하였고,

또한 관외출장을 승인받고 급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3명에게 각 매식비 8,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2] <u>급량비 초과지출 현황</u>

(단위: 원)

순번	구분	일자	부서	성명	지출금액	비고
1	초과근무 기록 없이 지급	2019. 9.30.	○○○○과	○○○	8,000	- 초과근무내역 확인 불가
2		2020. 9.23.	○○○○과	○○○	8,000	
3		2020.10.13.	○○○○과	○○○	8,000	
4		2021. 2. 3.	○○○○과	○○○	8,000	
5		2021. 2.24.	○○○○과	○○○	8,000	
6		2021. 3.11.	○○○○과	○○○	8,000	
7		2021. 3.11.	○○○○과	○○○	8,000	
8		2021. 3.11.	○○○○과	○○○	8,000	

9	초과근무 기록 없이 지급	2021. 3.11.	○○○○과	○○○	8,000	- 초과근무내역 확인 불가
10		2021. 3.30.	○○○○과	○○○	8,000	
11		2021. 4. 7.	○○○○과	○○○	8,000	
12		2021. 4.23.	○○○○과	○○○	8,000	
13		2021. 4.23.	○○○○과	○○○	8,000	
14		2021. 4.23.	○○○○과	○○○	8,000	
15		2021. 4.23.	○○○○과	○○○	8,000	
16		2021. 4.23.	○○○○과	○○○	8,000	
17		2021. 4.23.	○○○○과	○○○	8,000	
18		2021. 4.23.	○○○○과	○○○	8,000	
19		2021. 5. 6.	○○○○과	○○○	8,000	
20		2021. 6. 7.	○○○○과	○○○	8,000	
21		2021. 6. 7.	○○○○과	○○○	8,000	
22		2021. 6.10.	○○○○과	○○○	8,000	
23		2021. 6.10.	○○○○과	○○○	8,000	
24		2021. 6.28.	○○○○과	○○○	8,000	
-		소계(반납, 24명)			192,000	
25	관외출장비와 중복지급	2021. 3. 4.	○○○○과	○○○	8,000	- 재난안전통신망 교체수령
26		2021. 5.10.	○○○○과	○○○	8,000	- 직원 부친상 대표조문
27		2021. 8. 9.	○○○○과	○○○	8,000	- 징계관련 업무처리
-		소계(반납, 3명)			24,000	-
총계(반납, 27명)					216,0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단(前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11월),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2년) 소속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하여 도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다수 지적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여[감사위원회-9355(2020.7.27.)]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8건의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1,260,100원, 구조구급활동비 103,230원, 급량비 216,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주의·시정(회수·추급) 요구

제 목 외근근무자 초과근무실적 취합 및 수당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매월 외근부서로부터 초과근무실적이 보고되면 이를 취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현업근무자의 초과근무내역을 취합하기 위한 보고서식을 제작 배포하면서 작성방법 및 사용범례[2]를 지정하였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의하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1일 1시간

2) 초과근무내역 보고서식 범례

구분	범례
2020.4. 이전	◇ “주”=08:45~18:00 / “야”=17:45~익일09:00 / “당”=08:45~익일09:00 ◇ “반주”=주간근무시 반가 / “반야”=야간근무시 반가 / “반당주”=당번 반가시 주간근무 / “반당야”=당번반가시 야간근무 / “주출”=주간근무시 관외출장 ◇ “당연”=당번근무시 연가 / “주연”=주간근무시 연가 / “야연”=야간근무시 연가 / “순”=순번휴무 / “병”=변가 / “특”=특가+포상휴가 / “공”=공가 / “출”=출장 / “교”=교육
2021.5. 이후	◇ “주”=08:40~18:00 / “야”=17:40~익일09:00 / “당”=08:40~익일09:00 ◇ “반주”=주간근무시 반가 / “반야”=야간근무시 반가 ◇ “당연”=당번근무시 연가 / “주연”=주간근무시 연가 / “야연”=야간근무시 연가 ◇ “당병”=당번근무시 병가 / “병”=주간근무시 병가 / “야병”=야간근무시 병가 ◇ “당특”=당번근무시 특가 / “특”=주간근무시 특가 / “야특”=야간근무시 특가 ◇ “당공”=당번근무시 공가 / “공”=주간근무시 공가 / “야공”=야간근무시 공가 / “반공”= 반일공가 ◇ “출”=출장 / “주출”=주간근무시 관외출장 / “교”=교육 ※ 3조 1교대(당비비) 근무형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가기간, 교육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동일 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매월 외근부서에서 보고하는 초과근무 내역 서식의 범례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잘못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최종 완성된 초과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5월~현재) 동안 아래 [표1] “초과근무수당 오(誤)지급 현황”과 같이 보고서식의 범례를 잘못 적용하여 7명에게 574,9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3명에게 505,100원을 미지급하였다.

[표1] <u>초과근무수당 오(誤)지급 현황</u>

(단위: 원)

순번	대상					시간외 근무					비고 (범례 오입력 내역)
	부서	계급	성명	년	월	받은 금액		받을 금액		정산	
						실적	금액	실적	금액		
계	반납(7명, 574,900원), 추급(3명, 505,100원)										
1	○○	○	○○○	2019	6	75	674,400	83	746,330	-71,930	“교”3일 중 2개만 입력

2	○○	○	○○○	2019	9	82	793,350	72	696,600	96,750	“공”을 “반당주”로 입력
3	○○	○	○○○	2020	5	89	825,560	73	677,140	148,420	휴일을 “교”로 입력
4	○○	○	○○○	2020	6	21	194,790	39	361,760	-166,970	“당특”을 “특휴”로 입력
5	○○	○	○○○	2020	6	4	47,220	0	0	47,220	근무실적 없음(연가, 특가)
6	○○	○	○○○	2020	6	6	59,880	0	0	59,880	근무실적 없음(병가, 휴직)
7	○○	○	○○○	2020	10	84	779,180	76	704,970	74,210	휴일을 “교”로 입력
8	○○	○	○○○	2020	10	24	222,620	16	148,410	74,210	휴일을 “교”로 입력
9	○○	○	○○○	2020	10	24	222,620	16	148,410	74,210	휴일을 “교”로 입력
10	○○	○	○○○	2021	6	10	110,920	34	377,120	-266,200	“교”를 “교육”으로 입력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추급)] 잘못 산정된 실적으로 지출된 초과근무수당 574,900원을 회수하시고, 505,100원을 추가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1]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 실적 현황

연 도	소 계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법	다중이용업소법
2019년	8	-	3	5	-
2020년	1	1	-	-	-
2021년	7	-	2	5	-
합 계	16	1	5	10	0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39조(과태료)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양도·양수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소방청 훈령)」 제11조(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2019년 5월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위험물) 및 이동탱크저장소 현황 정비계획 알림" 문서를 시달하여 소방서별 자료에 대하여 시·군 차량관련부서에 차량현황 조회를 의뢰하여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현황 일제정비를 자체검증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이동탱크저장소 말소로 인한 용도폐지 미 신고 현황"과 같이 2019년 5월 기준 ○○소방서 관할 이동탱크저장소 60개소 중 4개소만 용도폐지 위반으로 소방본부에 보고하였고 이때 3개소가 누락되면서, 누락대상 중 1대가 2015. 01. 11. 차량말소 되었으나 2021년 3월에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5년)

또한, 현재 58개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군 ○○과에 명의이전 및 말소 등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조회한 결과 [표2]와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1대가 2020년 3월에 말소되었다.

○○소방서(○○○○과)에서는 본부 시달문서에 의거 일제정비 및 매년 통계조사에도 용도폐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말소로 인한 용도폐지 미 신고 현황

연번	차량번호	허가일자	차량 말소일	과태료 부과 여부	비고
1	강원00노0000	1996-11-07	2015-01-11	용도폐지 신고(2021-03-10) (제척기간 경과로 과태료 부과 못함)	2019년 5월 누락
2	강원00노0000	2000-12-22	2018-10-02	과태료 부과대상	2019년 5월 누락
3	00더0000	2018-11-01	2019-02-01	과태료 부과대상	2019년 5월 누락
4	00조0000	2019-02-28	2020-03-02	과태료 부과대상	현재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소방법규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20조,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신반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지위승계), 제11조(용도폐지),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이내에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지연보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차 250, 2차 350, 3차 500만 원까지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스스로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전통지서에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감경사유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위반자 스스로 감경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하여 부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3]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 현황"과 같이 총 과태료 부과건수 16건 중 12건에 대하여 감경부과하였고,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 등 12건에

---

3)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보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하여 10,2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해야 함에도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자체를 감경하여 안내하였고, 위반자가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전에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하여 5,100천 원으로 처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 현황

구분	대상명	적발일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해야할 과태료 금액	실제 부과 과태료 금액	비 고
1	○○○○	2019- 05-0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643일 지연 (소방시설법)	1,000,000	500,000	50%감경
2	○○○○	2019- 05-21	용도폐지 신고 394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700,000	350,000	50%감경
3	○○○○	2019- 05-23	용도폐지 신고 340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700,000	350,000	50%감경
4	○○○○	2019- 05-23	용도폐지 신고 37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300,000	150,000	50%감경
5	○○○○	2019- 05-23	용도폐지 신고 37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300,000	150,000	50%감경
6	○○○○	2019- 06-13	수신반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법)	2,000,000	1,000,000	50%감경
7	○○○○	2019- 08-08	지위승계신고 59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300,000	150,000	50%감경
8	○○○○	2019- 07-30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소방시설법)	2,000,000	1,000,000	50%감경
9	○○○○	2021- 03-12	용도폐지 신고 169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700,000	350,000	50%감경
10	○○○○	2021- 03-26	지위승계신고 298일 지연 (위험물관리법)	700,000	350,000	50%감경
11	○○○○	2021- 07-22	소방계획서 미작성 (소방시설법)	500,000	250,000	50%감경
12	○○○○	2021- 07-22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소방시설법)	1,000,000	500,000	50%감경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1년 8월) ○○소방서 ○○담당으로서 강원도 소방본부 ○○○○과에서 시달된 문서[○○○○과-0000(20○. ○. ○.)]에 의거 ○○군에 '이동탱크저장소 설치자 및 차량말소 등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문서[○○소방서 ○○○○과-0000(20○. ○. ○.)]를 발신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민원업무 담당자 소방○ ○○○이 이동탱크저장소현황을 2대(00더0000, 00조0000) 누락한 채로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못하였고, ○○군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군 ○○과-00000(20○. ○. ○.)]를 바탕으로 소방본부 ○○○○과로 제출한 일제정비 결과문서[○○소방서 ○○○○과-0000(20○. ○. ○.)]에 위험물 민원업무 담당자가 용도폐지 미신고사항을 2대(강원00노0000, 강원00노0000) 누락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적정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폐지신고가 총 4대 누락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1년 5월) 위험물 민원 업무담당자로서 강원도 소방본부 ○○○○과에서 시달된 문서[○○○○과-0000(20○. ○. ○.)]에 의거 ○○군에 '이동탱크저장소 설치자 및 차량말소 등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협조요청' 문서[○○소방서 ○○○○과-0000(20○. ○. ○.)]를 발신하는 과정에서 이동탱크저장소현황을 2대(00더0000, 00조0000) 누락한 채로 의뢰하였고, ○○군에서 회신 받은 문서[○○군 ○○과-00000(20○. ○. ○.)]를 바탕으로 강원도소방본부 ○○○○과로 제출할 일제정비 결과 문서[○○소방서 ○○○○과-0000(20○. ○. ○.)]를 작성하면서 용도폐지 미신고사항을 2대(강원00노0000, 강원00노0000) 누락함으로써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신고를 총 4건 누락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 ○○ ·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단, 소방○ ○○○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업무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 감경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경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위반사항 관리,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4](다중이용업 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합계	휴게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	영화	노래	목욕장업	기타
154	5	40	58	7	2	15	4	23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4)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은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착공신고, 다중이용업 소방시설완비증명,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소방민원처리에 대해 정보화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구축되었음.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관리 소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5](신규·보수·수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소방서(○○○○과)에서는 [표2] "신규 다중이용업소 교육이수일 현황"과 같이 소방서 완공신고 및 허가관청의 허가일 이후,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않고 최소 000일에서 최대 000일이 경과후 교육을 이수하였고, ○○○ 등 2개소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신규교육을 받도록 안내 및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았으며, 해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1. 신규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다중이용업 종사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교육 : 관련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표2] 신규 다중이용업소 교육이수일 현황

연번	업소명	업종	영업주	완공신고일	영업허가일	교육 이수일	교육 지체일	과태료 부과여부
1	○○○	단란주점	○○○	2019-04-02	2019-04-04	0000-00-00	000일	미부과
2	○○○	유흥주점	○○○	2019-11-11	2019-12-24	0000-00-00	000일	미부과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관리소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을 관리함에 있어 보험회사에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으로 통지한 보험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 가입 및 보험만기 도래된 대상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에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소방민원정보

시스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대상현황”과 같이 2개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최소 000일에서 최대 00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화재보험회사의 통지여부 확인이나 미 가입한 다중이용업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표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대상현황

구분	대상명	영업주	업종	가입일	종료일	실효일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여부
1	○○○	○○○	유흥주점	2020-01-07	2027-01-07	0000-00-00	000	미부과
2	○○○	○○○	유흥주점	2020-06-25	2025-06-25	0000-00-00	000	미부과

※ 자료: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1년 8월) ○○소방서 ○○담당으로 다중이용업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민원담당자 소방○ ○○○이 ○○군관내 다중이용업소 2개소(○○○, ○○○)에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부하면서 해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통지서 송부 등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1년 2월) ○○소방서 다중이용업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군관내 다중이용업소 2개소(○○○, ○○○)에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부하면서 해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통지서 송부 등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단, 소방○ ○○○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업무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안전교육을 늦게 이수한 다중이용업소 2개소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실효대상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현황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 확인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6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제3항에 따라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9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서 제20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2조(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시행)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에서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가 관련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이 발부된 대상에 대하여는 보완완료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보완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 확인 지연 현황”과 같이 조치명령이 발부된 대상에 대하여는 보완 완료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예 미확인한 대상이 4개소가 있었으며, 8개소는 조치명령 이행 확인을 최소 2일에서 최대 30일 지연 확인하여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 확인 지연 현황

연번	대상명	발부일	보완기한	확인일자	비고
1	○○○○	2019-09-10	2019-11-15	-	미확인
2	○○○○	2019-09-30	2019-10-31	-	미확인
3	○○○○	2019-10-15	2019-11-18	-	미확인
4	○○○○	2019-10-30	2019-12-31	-	미확인
5	○○○○	2019-09-10	2019-11-15	2019-11-27	2일 지연
6	○○○○	2020-01-20	2020-02-21	2020-03-30	29일 지연
7	○○○○	2020-01-30	2020-02-20	2020-03-30	30일 지연
8	○○○○	2020-02-06	2020-02-29	2020-03-30	21일 지연
9	○○○○	2020-02-06	2020-03-06	2020-03-31	16일 지연
10	○○○○	2020-02-12	2020-03-02	2020-03-31	20일 지연
11	○○○○	2020-02-19	2020-03-13	2020-03-31	9일 지연
12	○○○○	2020-02-19	2020-03-13	2020-03-31	9일 지연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4개소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관리를 철저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미확인대상 불량내역

대상	불량사항		
	설비명	구분	내역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1개층 선로단락시 다른층 비상방송 미경보 ※ 1개층 단락시 다른층 경보에 지장없도록 조치요
○○○○	소화기구	소화기	- 1층 식당 K급소화기 미비치 - 1층 식당 자동확산소화기 노후 (3KG 2EA)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 예비펌프 자동기동 불량 (수신기에 예비펌프 선로 미연결)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감지기 작동불량 (1층 관장실내 창고 차동식 감지기, 2층 체육관 무대부 연기식감지기)
	피난설비	유도등	- 지하1층,2층,3층 방화셔터 내 비상문 상부 피난구유도등(소) 미설치 3개소
○○○○	소화설비	소화기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전층)
		스프링클러	- 알림밸브 압력스위치 불량 2층 2번,3번 밸브(식당내 알람밸브실) - 건식밸브 세팅불량 (지하1층 2번 건식밸브)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장비 선로 보호회로 구성안되어 1개층 선로 단락시 다른층으로 비상방송 경보 안됨. → 1개층 단락시에도 다른층에 경보가능 하도록 개선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감지기 불량 (지하1층 알람밸브실 앞 복도, 1층 39번 기둥인근, B동 1203호앞 복도) - 지구경종 연동 불량 (103호, 123호 앞 소화전) - 수신기 단선 확인 (방재실 수신기 5개소)
	피난설비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복도)

○○○○	소화기구	소화기	- 소화기 미비치(건물전체) - 내용연수 불량(옥상 E/V기계실)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	- 소화수조 측 충수요 (지하1층 저수조, 옥상 옥상수조) - 옥내소화전 배관 세팅요 (지하1층 기계실 - 가압송수장치 수동 상태) - 옥내소화전함 호스 2본 망실(지하1층 주계단 앞) - 옥내소화전함 호스 정리요(지하1층 보조계단 앞)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 배관 파손 [지하1층 출입구 측(정비후 배관세팅요함)] - 기동용 감지기 선로 불량(지하1층 A, B 감지기) - 기동용 감지기 탈락(지하1층 게임장측 2개소)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감지기 선로불량 2개소 (3층 우측, 1층 화장실 측) - 감지기 미설치 (2층 315호 옆실 3EA, 1층 마사지측 2EA, E/V앞 복도, 203호 앞 복도) - 감지기 작동 불량 (주계단 옥탑 계단,4층 중앙,3층 샤워장 앞,303호) - 시각경보기 작동 불량(3층 좌 발신기 측)
	피난설비	완강기	- 파괴망치 미비치 (3층, 4층 완강기측)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미설치(중형이상) (1층 222호 앞, 지하1층 주출입구) - 통로유도등 미설치 (1층~지하1층 주계단) -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4층 보조계단측 2개소) - 통로유도등 점등불량(4층~3층 주계단) - 통로유도등 고정불량 (3층~2층 보조계단, 1층~지하1층 보조계단)
		휴대용 비상 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미비치 (1층, 2층 전객실)
	기타	방화문	- 도어클로저 미설치(2층,3층 보조계단 측) - 도어스토퍼 설치 → 제거요 (전층 계단실 측 방화문)

[일련번호: 6]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37조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요약 발췌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소방특별조사 시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20○. ○. ○.(목) ○○소방서 ○○○○과 소방○ ○○○ 및 [표2]의 주유취급소 관계인과 동행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주유취급소 불량사항 내역"과 같이 변경허가 대상 주유취급소 총 4개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중 ○○주유소의 경우 방화담이 철거되어 있음에도 아래 [표3] "주유취급소 검사 관련 소방특별조사내역"처럼 소방특별조사 시 불량사항을 적발하지 못하여 「위험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이를 철거 또는 허가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을 검토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표2] 주유취급소 불량사항 내역

연번	대상	변경허가일	완공검사일	불량사항
1	○○주유소	2019-05-16	2019-06-17	○ 화장실 옆 약 7.5㎡ 건축물 증축 (1.5m x 5m) ⇒ 샌드위치판넬 추정
2	○○주유소	2019-06-04	2019-06-17	○ 사무실 좌측 약 57.04㎡ 세차장 증축 (6.2m x 9.2m) ○ 방화담 5.2m 철거
3	○○주유소	2019-05-22	2019-07-24	○ 건물 뒷편 약 8.1㎡ 건축물 증축 (2.25m x 3.6m) ⇒ 샌드위치판넬 추정
4	○○주유소	2019-05-21	2019-06-17	○ 건물 뒷편 약 27.3㎡ 건축물 증축 (1.95m x 14m)

[표3] 주유취급소 검사 관련 소방특별조사 내역

연번	대상	검사일	인원	조사결과	비고
1	○○주유소	2020.07.24.	○○○,○○○ ,○○○	불량	
		2021.08.31.	○○○, ○○○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2	○○주유소	2020.07.24.	○○○,○○○ ,○○○	위험물취급소 게시판 현행화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 탈락	
		2021.08.31.	○○○, ○○○	주입구 접지 불량, 방송장비 음향불량 이동탱크저장소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3	○○주유소	2021.11.16.	○○○, ○○○	건물뒷편 창고 8.1㎡ (무허가, 가연성재료)	
4	○○주유소	2020.06.25.	○○○,○○○ ,○○○	양호	
		2021.11.16.	○○○, ○○○	건물뒷편 창고 27.3㎡ (무허가)	

그 결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취급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연소확대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4개소에 대하여 이를 철거 또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고, 벌칙조항 적용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해임 등에 관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미발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일정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되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6]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업무 중 3번과 5번 업무만 대행 가능(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참조)

그리고「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한 전체 26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소방안전관리자 업체대행 현황

연번	대 상 명	선임신고일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유무
1	○○○○	2017-05-16	○○○○	×
2	○○○○	2020-11-17	○○○○	×
3	○○○○	2014-11-26	○○○○	×
4	○○○○	2020-01-20	○○○○	×
5	○○○○	2016-01-26	○○○○	×
6	○○○○	2018-07-20	○○○○	×
7	○○○○	2017-10-10	○○○○	×
8	○○○○	2021-07-01	○○○○	×
9	○○○○	2018-12-26	○○○○	×
10	○○○○	2020-11-11	○○○○	×
11	○○○○	2019-03-26	○○○○	×

12	○○○○	2019-07-23	○○○○	×
13	○○○○	2016-03-07	○○○○	×
14	○○○○	2021-07-15	○○○○	×
15	○○○○	2016-11-25	○○○○	×
16	○○○○	2019-10-22	○○○○	×
17	○○○○	2019-12-09	○○○○	×
18	○○○○	2021-04-12	○○○○	×
19	○○○○	2019-07-09	○○○○	×
20	○○○○	2015-04-03	○○○○	×
21	○○○○	2020-07-28	○○○○	×
22	○○○○	2018-03-05	○○○○	×
23	○○○○	2021-09-06	○○○○	×
24	○○○○	2021-10-12	○○○○	×
25	○○○○	2021-06-01	○○○○	×
26	○○○○	2021-07-29	○○○○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7]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2] 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 23개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1개소 총 24개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7)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표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직위	감독적 직위	자격여부	비고
1	○○○○	○○○	2018-07-02	대리	X	강습수료 (공공기관)	
2	○○○○	○○○	2021-07-01	대리	X	강습수료 (공공기관)	
3	○○○○	○○○	2021-01-25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4	○○○○	○○○	2014-08-06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5	○○○○	○○○	2021-03-15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6	○○○○	○○○	2021-03-18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7	○○○○	○○○	2020-01-06	사원	X	강습수료 (공공기관)	
8	○○○○	○○○	2020-12-18	주무관	X	소방안전관리자 1급시험합격	
9	○○○○	○○○	2021-01-28	대리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0	○○○○	○○○	2019-03-12	대리	X	전기기사	
11	○○○○	○○○	2021-11-04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2	○○○○	○○○	2021-01-07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3	○○○○	○○○	2021-01-01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4	○○○○	○○○	2021-01-12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5	○○○○	○○○	2021-07-01	주무관	X	강습예정 (공공기관)	
16	○○○○	○○○	2021-07-01	행정7급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7	○○○○	○○○	2020-09-08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8	○○○○	○○○	2021-07-17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19	○○○○	○○○	2020-12-09	사원	X	강습수료 (공공기관)	
20	○○○○	○○○	2021-10-21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21	○○○○	○○○	2021-07-16	시설관리	X	강습수료 (공공기관)	
22	○○○○	○○○	2021-10-01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예정	
23	○○○○	○○○	2020-10-05	주무관	X	강습수료 (공공기관)	
24	○○○○	○○○	2021-06-29	관리사무소장	X	경력인정(2급)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적정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해당 표에 있는 2급 경력인정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8]에 해당되지 않음.

8)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23개소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1개소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표1] 과 같이 총 422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승하강식	비상소화장치
	422	338	9	7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도로교통법」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2]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2] <u>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u>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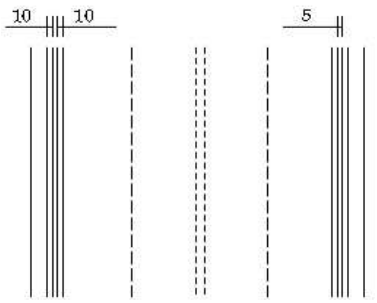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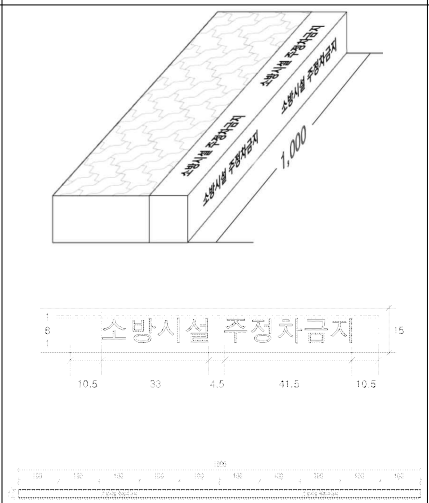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및「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31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338개소, 승하강식 9개소, 비상소화장치 7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3] 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u>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설치 현황</u>

연번	관할	관리번호 (위 치)	사진
1	○○센터	○○000호 (○○읍 ○○길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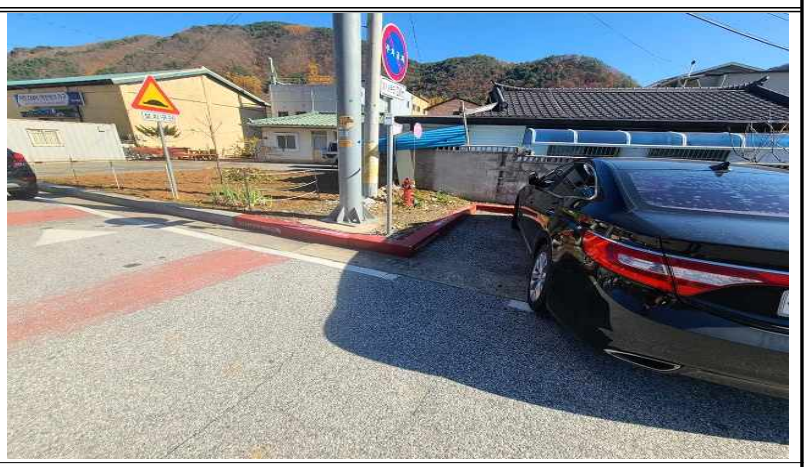
2	○○센터	○○000호 (○○읍	

		○○길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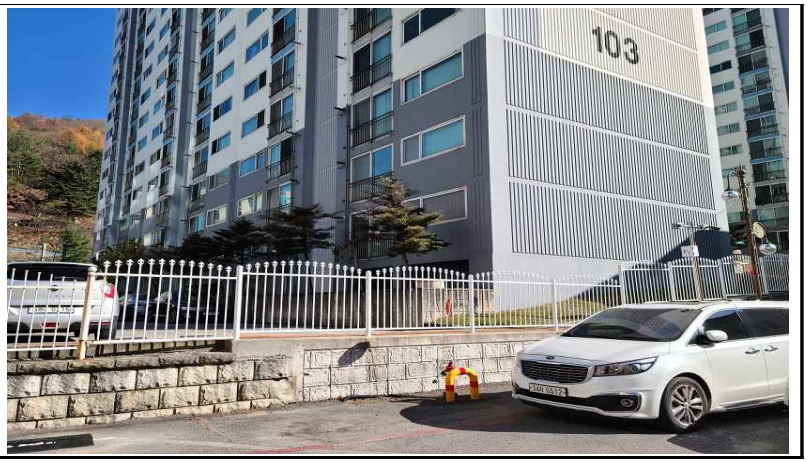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수리현황에 대해 고장발생 보고 및 소방용수조사부 확인한 결과 [표4] 와 같이 ○○ 000호의 경우 2019. 9. 1. 지수리 조사 시 스핀들 개폐불량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어 소화전 고장발생 보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소방용수조사부 확인 결과 소화전 수리 이전까지 양호로 올리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4] <u>소방용수시설 수리현황 중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소홀 현황</u>

관리부서	관리번호	고장일자	고장발생보고	수리완료일자	비고
○○센터	○○000호	2019-09-01	2019-09-02	2019-11-21	스핀들 개폐불량으로 소화전 고장 인지하였으나, 소방용수조사부 19년 9, 10월 양호로 작성
○○센터	○○000호	2020-07-29	2020-07-30	2021-05-25	21년 2월 소방용수조사부 기안 내역 부존재
○○센터	○○000호	2020-09-23	2020-09-27	2021-05-25	20년 11, 12월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안됨

2. 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부칙<행정안전부령 제160호> 제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의 인근에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종전의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하여 2020. 2. 20. 개정(시행) 후 3년 이내에 [표5] 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5]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2020. 2. 20. 개정>

구 분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	
지하식 소방용수시설	○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이상의 것으로 할 것(승하강식 소화전 제외) ○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에 따라 칠할 것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그림]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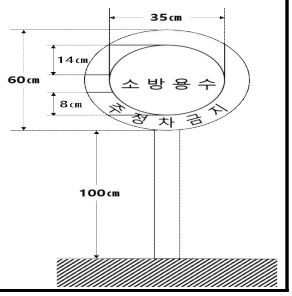

자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재구성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겨울철 폭설로 인해 소화전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지역임에도 [표5] 와 같이 관내 지상식 소화전 전체에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2021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용수 표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소방용수표지 설치현황

(단위: 개소)

지상식 소화전	소방용수 표지 설치여부	
	설 치	미설치
338	0	338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관계부서와 빠른 기간 내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화재 등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에 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